

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 실시 및 농가의 농지취득지원을 위한 도세 불균일과세에
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(안)

심 사 보 고 서

내 무 위 원 회
1993. 12. 21.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. 제출일자 : 1993년 12월 17일

. 회부일자 : 1993년 12월 17일

다. 상정일자 : 제 97 회 정기회

. 제 11·차 내부위원회 (1993. 12. 21.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내부국장 조영창)

가. 제안이유

-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'96년도에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
경우 개인간의 거래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부담이 일시에 증가
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

- 현행 검인계약서 사용시 적용되는 감면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기 위한 1단계 방안으로 '94년도에 시행할 경감율을 현행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30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동조례 제3조중 "100분의 40"을 "100분의 30"으로 개정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윤 태 무)

충청북도 검인계약서 제도실시 및 농가의 농지취득지원을 위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,

현행 검인계약서 사용시 적용되고 있는 감면율에 있어 당해 토지와 건축물 계약서상 금액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40을 감면해주고 있는바

이에대해 '94년도에 시행 할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축소 조정 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서

이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라 '96년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 하게될 경우 개인간의 거래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일시적인 세부담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기 위한 것으로서

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 론 요 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심 사 결 과 : 도 원안대로 의결(참석7인, 찬성7인)

7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검인계약서 제도실시 및 농가의 농지취득지원을 위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
- 신구조문 대비표